

#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이광성 의원 외 10명
- 나. 의안번호: 제2474호
- 다. 발의일자: 2021. 5. 28.
- 라. 회부일자: 2021. 6. 1.

### 2. 제 안 사 유

- 현재 지구온난화 및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서울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회환경교육을 신설함(안 제7조 제2호의2).

###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환경교육진흥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공무원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현재도 서울시는 소속기관인 인재개발원을 통해 환경교육에 대한 집합교육과 이러닝, 공직자 기후변화 특강 등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별다른 의견은 없음.

다만, 현행 조례 제7조제2호에 환경교육 활성화 대상에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가 규정되어 있는 바, 별도 호를 신설하지 않고 동 호에 서울시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행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는 법률마다 다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신설> 3. ~ 6. (생략)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 -----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2의2.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실시 3. ~ 6. (현행과 같음)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 ----- 1. (개정안과 같음) 2. 시,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삭제> 3. ~ 6. (개정안과 같음)